

구민의 작은 목소리에도

커 기울이는 금천구의회

복지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2020. 6. 18(목) 10:00

제223회 금천구의회 정례회 심사안건 검 토 보 고 서

서울특별시 금천구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복지가족국 소관)



복 지 건 설 위 원 회
전문위원 추병수

서울특별시 금천구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제안경위

- 가. 의안번호 : 제1993호
- 나. 제 출 자 : 금천구청장
- 다. 제출일자 : 2020. 5. 29.
- 라. 회부일자 : 2020. 5. 29.

2. 제안이유

노인복지기금의 존속기한이 2020년 12월 31일로 만료되어 그 기한을 2025년 12월 31일로 연장하고, 인용된 조항의 오탈자를 포함한 일부 문구를 수정 또는 삭제하여 현실에 맞게 정비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가. 기금의 존속기한을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변경(안 제2조의2)
- 나. 인용조항을 ‘제3항’ 에서 ‘제4항’ 으로 변경(안 제6조제5항)
- 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규정된 내용을 동일하게 기재한 조문과 그 밖에 불필요한 조문 삭제(안 제10조 및 안 제12조~제14조)
- 라.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 변경 및 띄어쓰기 수정

4.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
 - 나. 예산조치: 별도조치 필요 없음
 - 다. 합의기관: 해당기관 없음
 -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도첨부

- 2) 입법예고: 2020. 4. 24. ~ 2020. 5. 14.(20일 이상)
- 3)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별도첨부
- 4) 규제사전심사: 별도시행(기획예산과)
- 5) 부패영향평가: 별도시행(민원감사담당관)
- 6) 성별영향분석평가: 별도시행(여성가족과)

5. 검토의견

가. 개정 경위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제4조에 따라 노인기금의 존속기한이 2020년 12월 31일에 만료됨에 따라 이를 연장하고 상위법령에 따라 조문을 수정·삭제하여 현실에 맞게 정비하기 위해 원활하게 추진하고자 구청장이 제출한 개정조례안으로,

나. 주요 내용

- 안 제2조의2는 기금의 존속기한을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는 것으로 다양한 노인복지 정책 사업을 통한 노인복지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노인복지기금의 존치가 필요하므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제4조에 따라 기한 연장은 타당하다 보며
- 안 제10조 및 안 제12조~제14조까지는 상위법령에서 규정된 내용과 불필요한 조문을 삭제하는 안으로 개정안의 입법 취지는 타당하다 봄.
- 그 밖에 조문들은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적정하게 정비됨.

다. 검토의견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에 근거하여 노인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하여 노인복지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지방재정계획 심의 절차를 이행하는 등 관련 법령이나 절차상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관련 법령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 2020. 4. 30.] [법률 제16887호, 2020. 1. 29., 일부개정]

제4조(기금의 존속기한) ① 지방자치단체가 기금을 신설하여 운용하려는 경우에는 기금의 존속기한을 해당 조례에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운용되는 기금과 「지방공기업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지역개발을 위한 기금은 존속기한을 명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5.7.24.>

② 기금의 존속기한은 기금의 설치목적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으로 설정하여야 하며, 그 기간은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5.7.24.>

③ 존속기한을 넘어서까지 기금을 존치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5년의 범위에서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재정법」 제33조제9항에 따른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신설 2015.7.24.>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금의 존속기한 및 통합·폐지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한 5년 단위의 기금정비계획을 매년 작성하여 이를 「지방재정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신설 2015.7.24.>

[전문개정 2011.5.30.]